

# 강령규약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(이하 강규개정소위)에 대하여

## 1. 강규개정 소위를 꾸리는 의의와 목표

- 1)여성해방의 상과 경로에 맞게 전여대협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강규에 명확히 함으로서 50만 여학우들의 자주적 삶을 담보하기 위해서이다.
- 2)몇몇 일군들의 고민으로 강규를 개정하기보다 전체 여학일군들과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면 전여대협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함이다.
- 3)구체적이고 명확한 강규로 되기 위해서 불필요한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위해서이다.

## 2. 강규개정 소위의 상

중상에서 결정하여 강규개정 소위원회를 꾸려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가면서 논의와 토론 그리고 강규개정 초안을 내오고 이것을 기층토론을 거쳐 중상안으로 확정하여 7월 중반정도 임시총회를 통해 강규개정을 진행한다.

## 3. 강규개정 소위의 구성

- 강규개정 소위 위원장 - 중상 중 1인
- 소위 집행간부 - 전여대협 중집 1인
- 소위 위원 - 지역별 1인씩

## 4. 강규개정 소위의 활동

- 정기적인 모임-한달에 한번 정기모임, 일주일에 한번 정팅모임.
- 지역별 토론 주제-지역별로 1인씩 들어오는 소위 위원이 지역 토론을 만들어나간다

## 5. 강규개정 소위의 계획

- 3월말까지 강규개정 소위 꾸리고 첫모임 진행
- 4월 강규개정 의의와 목표 잡고 기본 숙지 및 고민 들어가기
- 5월 전문 및 강령에 대해 구체적 고민
- 6월 규약 및 시행세칙에 대해 구체적 고민
- 7월초반까지 강규개정 초안 제출하기
- 7월 중순 전여대협 임시총회에서 확정

## 참고)

- 규약중
- 제 1절 대표자 총회
- 제 12조(권한) 대표자 총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.
- 1) 본회의 강령과 규약의 제정 및 개정을 한다.